특 허 법 원

제 2 5 - 1 부

판 결

사 건 2022나1043 손해배상(지)등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담당변호사 정강찬

법무법인 율호, 담당변호사 배수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김라온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564668 판결

변론종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3,810,146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3.부터. 291.958,78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62.813.67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89,028,915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458,805,009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673,220,198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795.838.575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출원사실증명원 기재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을 표 현할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구분 항목의 '세대 온도제어 시스템용 밸브 제어기 및 그 의 세대 열량 보상방법' 특허를 구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 스파일 및 실행파일을 직접 사용하거나, E[대표자 F, G 서구 H I 2층(J동)]을 포함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위 프로그램 소스파일 및 실행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문서를 모두 폐기하라, 피고는 위 제품에 위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다 운로드 하거나, 위 제품을 생산, 판매, 설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연 7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어기 관련 계약관계

- 1) 주식회사 K는 2014. 9. 18. 피고와 아파트 각방의 난방을 제어 및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중앙제어기(이하 '제어기'라 한다)를 2014. 9. 18.부터 2015. 2. 28.까지 대금 22,500,000원에 개발하기로 하는 기술연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주식회사 K는 2015. 1.경 제어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이용한 제어기를 납품하였다.
- 2) 주식회사 K에서 S/W 개발부 이사로 근무하던 B는 'A'라는 상호로 2015. 9. 8. 피고와 제어기 10,000개를 대금 200,000,000원에 피고의 발주에 따라 납품하기로 하는 부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 3) 이후 B가 위 'A'를 기초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6. 2. 16. 납기일을 2016. 6.로 정하여 제어기 500개 및 온도조절기(이 하 '조절기'라 한다) 1,700개를 발주하였고, ② 2016. 3. 23. 납기일을 2016. 5.로 정하 여 제어기 1,468개 및 조절기 4,699개, 납기일을 2016. 6.로 정하여 조절기 1,800개, 납 기일을 2016. 8.로 정하여 제어기 2,356개 및 조절기 9,407개, 납기일을 2016. 12.로 정하여 제어기 2,946개 및 조절기 11,126개를 각 발주하였다.

나. 파일 제공 경위

1)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제어기 및 조절기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이하 위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이 사건 소스파일'1)이라 한다)의 견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제어기와 조절기 제

¹⁾ 원고와 피고는 '소스', '소스코드', '소스파일'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소스파일'이라는 용어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의 소스코드'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관하여 300,000,000원의 견적가격을 제시하였다(견적서는 2015. 12. 18.자로 작성되어 있다).

- 2) 원고는 2016. 6. 5. 피고에게 'ver101r6_160605._zip'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 3)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추가 납품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납품 관련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의회의록에는 'B가 선급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납품에 문제를 발생시켰고, 피고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 6. 3. 프로그램 소스 제공을요청하여 2016. 6. 5. 제공받았으나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확인되어 2016. 6. 10. 18:00까지 다시 제공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해결책으로 피고와의 사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B가 회의 참석자로서명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ver101r6_20160609._zip'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 4) 원고는 2016. 6. 24. 피고와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납품 관련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의 회의록에는 '원고가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프로그램 최신 버전을 2016. 6. 24. 18:00까지 제출한다. 신규 진행 건은 L(이후 'E'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해냄'이라 한다)가 원고 대신 진행하고 원고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관여하고 해냄에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가 회의 참석자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6. 6. 25. 피고에게 'ver101r6625._zip'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다. 감정절차

- 1) 제1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하여 원고와 피고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에 관한 감정을 진행하였다. 감정은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원고가 2020. 8. 10. 감정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프로그램(이하 'A 프로그램'이라 한다), 피고가 2016. 6. 25. 원고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 한다),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제출한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각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하여,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B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 제1심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비교한 결과,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98.39%가 동일, 유사하고, B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C언어의 문법적 특성에 따른 중복적인 표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 12, 32, 33, 5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거래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소스파일을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해냄에게 제공하여 위 소스파일이 적용 된 제어기 및 조절기를 공급받거나, 피고 스스로 또는 해냄을 통하여 위 소스파일을 사용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손해배상금 2,741,810,146원(매출이익 및 개발비 1,456,567,625원 + 2019. 7. 9. 이후의 증액 손해배상액 1,285,242,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관련한 청구취지 기재 금지 및 폐기청구 등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위 소스파일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청구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스파일을 원고로부터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거나 부정하게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25.자로 제공한 원고의 소스파일은 컴파일조차 되지 않는 것이어서 실행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피고는 해냄에게 이 사건 소스파일을 전달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은 서로 유사성이 없는 전혀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스파일을 부정하게 또는 무

²⁾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근거한 주장을 철회하였다(제1차 변론조서 참조).

단으로 제공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 220607 판결 참조).
-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

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등참조).

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소스파일 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원고와 피고의 각 소스파일의 실질적 유사성(저작권 침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아래 각 항목에서 드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부정하게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의 각 소스파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주장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소스파일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

이 사건 기술연구용역계약(을 제1호증)의 제11조 제1항에서 "연구의 결과 혹은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목적코드,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기타 지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 권리 발생과 동시에 '갑'(피고)이 소유한다. 단, 소스코드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스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식회사 K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스파일의 소유권은 그 후 주식회사 K에서 B를 거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부정하게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의 각 소스파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인정 사실에다가 제1심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해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 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소스파일을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 하였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 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사 건 소스파일로부터 의거하여 이용된 것으로서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5.과 2016. 6. 10. 소스파일을 제공하였으나, 각각의 제공 후에 개최된 2016. 6. 10.과 2016. 6. 24. 회의의 회의록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소스파일이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원고는

2016. 6. 25. 소스파일을 다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스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그것만으로 2016. 6. 25. 제공된 소스파일이 사용가능한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위 감정서의 다른 부분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 프로그램에 있는 'led.dep' 파일은 LED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어기와 조절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B 프로그램 폴더들의 수정날짜가 동일하지 않고, 실행파일을 실행한 경우에만 수정날짜가 변경되는 'woodang.stw'와 'woodang.wed' 파일의 수정날짜가 2020. 10. 12. 18:29로 감정을위한 프로그램 제출 직전인 점, ③ 이와 유사하게 C 프로그램의 'led.dep' 파일의 수정날짜는 2020. 10. 12. 18:33으로 위 'woodang' 파일의 수정날짜와 4분밖에 차이가 나지않는 것을 보면, 피고가 B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점, ④ 원고의 개발환경에서는 생성되지만 피고의 개발환경에서는 생성될 수없는 'checkres.spy' 파일이 C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된 점, ⑤ 원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C 프로그램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function.c', 'function.h' 파일이 C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감정절차에서 원고의 소스파일과 비교할 피고 소스파일로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면 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고(2020. 9. 25. 제1심법원의 8차 변론조서), C 프로그램이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스파일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C 프로그램이 제어기에서 구동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2021. 9. 1. 제1심 법원의 11차 변론조서)], ②

파일명은 개발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led.dep'라는 명칭의 파일이 있다 는 이유로 제어기와 조절기 관련 프로그램 소스파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 고는 'led'가 'logic electronic device'의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B 프로그램 폴더 와 파일의 수정날짜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을 위하여 제출하기 전 컴파일이 되는지 확 인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2017. 2.경부터라는 것이 므로 B 프로그램의 수정날짜인 2020. 10. 12.까지 원고 소스파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 어 보이는 점, ④ 'checkres.spy', 'function.c', 'function.h' 파일이 오로지 원고 프로그 램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checkres.spy' 파 일은 개발환경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고 개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며 소스 코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파일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각 파일을 구성하는 소스코드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는 2016. 4.경부터 제어기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 프로그램 중에는 수정날짜가 2016. 7. 15.인 것도 있어 개발기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⑥ 제1심 감정인은 감 정서에 기재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소스파일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피 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사용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고, 원고와 피고의 각 소스파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와 연락을 취하면 서 성실하게 피고의 요청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프로그 램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할 무렵에 도 피고 직원들이 원고에게 신규 모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견적을 요청한 점(갑 제 15, 16호증), ③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피고가 해냄에 원고의 프로그램 분석과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4호증의 2), ④ 피고나 해냄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이 사건 소스파일을 해냄에게 제공하여 제어기 및 조절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증인 조승범의 진술만으로는 피고나 해냄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소스파일의 실행이 가능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각 소스파일이 서로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제공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기술연구용역계약의 제11조 제2항은 주식회사 K의 피고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가 아닌 해냄으로부터 제어기 및 조절기를 공급받은 것은 주식회사 K 및 B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한 의무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술연구용역계약의 제11조 제2항이 "피고는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양산 시 주식회사 K 이외의 타사와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동등일 경우 주식회사 K에게 우 선 공급자의 조건을 부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B와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및 3. 원고에게 각 제

어기 기준 7,270개, 2016. 6. 24. 해냄에게 제어기 기준 2,730개 총합 제어기 기준 10,000개를 발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의 해냄에 대한 발주 건은 원고 측의 납품 진행 곤란 등의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해냄으로부터 위 발주 건 이외에 공급받은 제어기 및 조절기에 사용되는 피고의 프로그램은 원고 소스파일에 대한 의거성 및 원고 소스파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설치 및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제어기 및 조절기의 품질과 원고 소스파일이 적용된 제어기 및 조절기의 품질이 동등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기술연구용역계약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는 2016. 6. 24.자 회의에서 2016. 2. 및 3. 각 발주분에 대한 납품으로 선급금이 상계되면 원고와 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스파일을 제공한 것인데, 원고가위 합의에 따른 납품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해냄과 거래하여 제어기 및 조절기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발주 거래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6. 24.자 회의의 회의록 기재는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납품 시기 등의 거래 조건이 맞으면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제어기 및 조절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작계약 외에 구체적인 추가 발주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술연구용역계약의 개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조절기인 이른바 '우당' 조절기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피고에게 이를 독점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소스파일에 위'우당' 조절기 관련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해냄에게 제공하여 해냄이 이를 사용하게 하여 '우당' 조절기 제품을 납품받았는데, 이는피고의 위 거래재개 의무 위반 및 우선공급권 보장 의무에도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해냄에게 원고의 소스파일을 제공하여 이에 의거하여 조절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발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부터 제13 쪽 1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우성엽

판사 김기수

[별지]